

제 호

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서

1. 기관명:

2. 대표자 성명:

3. 사무소 주소:

(전화번호:)

「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 기관을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농촌진흥청장 ·
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
특별자치시장 · 도지사 ·
특별자치도지사

직인